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9. 3. 12.~3. 18.

# 조 례 안 상 정

(조례 14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2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019-2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2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2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19
2019-25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9-2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9-2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19-2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9
2019-29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51
2019-30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019-3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2019-32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2019-33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2019-34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83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9-21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군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2조)

1) 군정 주요현안,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제안·심의 등

나. 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3조)

1) 30명 이내,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호선

2)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군민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다.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간사, 의견청취를 정함(안 제7조~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2019년 1차 추경 시 예산 4,2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14.~2.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거창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기능)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등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군민행복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수당

나. 관련 조문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 태 정



##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2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부위원장 변경(안 제2조제2항)

1) 기획예산담당관 ⇒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2조제2항)

1) 의안제출 주무실과장 ⇒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  
다. 당연직 위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1)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  
⇒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생략함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을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결정”을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을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u></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안제출 주무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p>④ <u>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u></p> <p>⑤ <u>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제2조(구성) ① <u>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u></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각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p>④ <u>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u></p> <p>⑤ <u>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3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고문변호사 위촉제한과 해촉사유,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하여 고문변호사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변경

#### 1)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고문변호사 위촉제한 근거 신설(안 제2조제2항)

####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 다. 고문변호사 임기 변경(안 제4조제1항)

#### 1) 1년 ⇒ 2년

### 라. 고문변호사 해촉 근거 신설(안 제5조)

####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마. 이해충돌행위 금지 사항 신설(안 제6조)

####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 또는 자문을 하거나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바.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금액과 시기 변경(안 제9조)

#### 1) 지원금액 : 5천만원 ⇒ 2천만원

#### 2) 지원시기 : 판결 이후 지급 ⇒ 피소 이후 지급

### 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8,200천원 확보

다. 합 의 : 예산담당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27.~2019. 1.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심판 사건(이하 “소송 등 사건”이라 한다)의 자문
2. 법령 해석·적용 등에 관한 자문
3.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같은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 등 사건의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송 등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 가. 불변기일 경과, 변론 불출석 등 불성실하게 소송 등을 대리하는 경우
  -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7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8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고문 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자문 실적부(            월)

종 류	의뢰 연월일	의뢰내용	회신 연월일	회신내용	비 고
<p>종류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그 밖의 자문사항”으로 기재함</p>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자문수당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66,000
	소송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20,000
	총 계	18,200	18,200	18,200	18,200	18,200	91,000

3. 관련 의견 : 고문변호사 위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하여 고문 변호사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 태 정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 조례안

의안 번호	2019-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조건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부담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 1) 폐수 등 유입처리의 승인 등의 내용(안 제3조)
  - 2) 배수설비의 설치 통지의 내용(안 제4조)
- 나.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등의 내용(안 제5조)
- 다. 폐수 등 배출 신고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51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제1회추경예산 34백만원 확보예정/운영비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2. 8.~12. 27.
    - 나) 예고결과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붙임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주식회사 가우정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기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li> <li>○ 조례 제정으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귀 기관에 강력한 항의를 하며 친기업적인 방안을 수립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법적의무 사항이며,</li> </ul>	미반영
KC FEED (케이씨피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조례 제정은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거창군 직원 채용이 중단되거나 인원감축의 사유가 되므로,</li> <li>○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하여 군에서 기업지원을 늘려주고 조례 제정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 제12조에 기업체의 사용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일부 지원 조항을 규정하였음.</li> </ul>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통지)** 제3조에 따라 오수·폐수 유입 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촉 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군수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

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수·폐수의 유입 처리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의 오수·폐수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아 처리 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 사용료 산출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처리시설 사용료(BS)

$$BS = M \times \left\{ 0.5 \times \frac{BLi}{\sum_{i=1}^n BLi} + 0.5 \times \frac{F(Li)}{\sum_{i=1}^n F(Li)} \right\}$$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1)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 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times Fi \times R$$

· Ei: 시설 설치 비용

· Fi: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 2/1,000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 BLi: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1)  $BLi = \text{유량}(m^3/\text{일}) \times [\text{BOD} + \text{COD} + \text{SS} + \text{T-N} + \text{T-P 농도}(mg/\ell)] / 1,000$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균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F(Li):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F(Li) = a \cdot Qi \times \left( \frac{BODi + CODi}{2} + SSi + T-Ni + T-Pi \right) / 1000$$

1) Qi: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2) BODi, CODi, SSi, T-Ni, T-Pi: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3) a: 유량 누진계수

유 량 (m <sup>3</sup> /일)	a
$Q_i \leq 200$	1.0
$200 < Q_i \leq 500$	1.1
$500 < Q_i$	1.2

##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2) 오수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times$  0.8(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times$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2) 오수의 경우

###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N 30 mg/ℓ (기숙사 40 mg/ℓ)
- T-P 3 mg/ℓ (기숙사 4 mg/ℓ)

[별표 2]

## 사용료 지원금(감면) 산출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

$$CS = a \times Qi \times 539 \text{원}/m^3$$

가. CS: 월간 사용료

나. a: 누진계수

(오수배출업소 a=1.0, 폐수배출업소 a=1.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업소 a=1.2)

다. Qi: 업소별 월간 배출유량

라. 539: 연간유지관리비 252,285,000원 / (30일\*12개월)=700,792원/일  
700,792원/일 ÷ 1,300m<sup>3</sup>/일=539원/m<sup>3</sup>

### 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

가.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text{개별 사업장 시설개선충당금} = \text{월간 시설개선충당금} \times \frac{Qi \text{ m}^3/\text{일}(\text{개별사업장 배출유량})}{\sum Qi \text{ m}^3/\text{일}(\text{전체사업장 배출유량})}$$

나. 월간 시설개선충당금(E):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1]의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의 시설개선충당금 항목을 적용한다.)

다. 배출유량: 사용료 산출기준[별표 1]의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의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을 적용한다.

### 3.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오수배출업소의 사용료 지원금은 거창군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에 따른 요금과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수·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기준(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을 적용한다.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담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 나. 관련조문 :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 출	사용료 부담지원	34,000	45,000	300,000	300,000	300,000	979,000
	소계	34,000	45,000	300,000	300,000	300,000	979,000

## 3. 관련 의견

기업체의 사용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시설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 60퍼센트 도달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 일부 지원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5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이 조례에 따른 기업의 지원기준 중 하나인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하여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증명 근거를 변경함(안 제2조제13호가목)

1) 기업체에서 제출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28.~2.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다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 (생략)</p> <p>13.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자</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자</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 (현행과 같음)</p> <p>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사람</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사람</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6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임원 규정 삭제(안 제4조)
- 나. 이사회 규정 삭제(안 제5조)
- 다. 사무국 규정 삭제(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6조 「민법」 제40조·제43조
- 2) 「지방자치법」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24.~2019. 1.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 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p> <p>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p> <p>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5조(이사회)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6조(사무국)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p>	<p>&lt;삭 제&gt;</p>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7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규정과 개최실적이 없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2018. 12. 18.)으로 조례로 위임된 보조신청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 범위 삭제(안 제2조)
- 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조사업 신청절차 보완(안 제4조)
- 다. 유명무실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6조~제10조,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 7.~1. 28.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조사업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 제8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 4. 보조사업 효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1조·제12조를 제6조·제7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li> <li>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li> <li>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li> <li>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li>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li> <li>6.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li> <li>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li>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li> </ol>	<p>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li> <li>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li> <li>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li> <li>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li>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li> </ol> <p>&lt;삭 제&gt; &lt;삭 제&gt;</p> <p>6.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p>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청 공무원 3명,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센터의 교육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삭 제>

<삭 제>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12조 (생략)

제6조~제7조 (현행 제11조·제12조와 같음)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서식]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남/여)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 목적			
보조사업에 <u>필요한</u> 경비			
총사업비	군비보조	자체부담	<u>그 밖의 경비</u>
보조사업 기간			
사업계획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9-28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2009. 12. 30. 제정·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 25~2.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19-29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운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거창사랑상품권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상품권 종류와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4조)

- 1) 5천원권, 1만원권
- 2) 발행일부터 5년 유효함

다. 가맹점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제7조)

라. 판매대행점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마. 환전 청구 및 환전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1) 환전한도 :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바. 할인판매,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제12조)

- 1)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개인에게만 연간 4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인 판매
- 2) 추가 할인 판매 :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상품권 금액 10퍼센트 이내, 이용 실적이 우수한 사용자

사.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제14조)

아.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우대할 금액의 환수에 대하여 정함(안 제15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28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2.~11.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랑상품권”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거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창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을 개인 및 법인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이하 “환전”이라 한다) 업무를 금융기관(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액(券面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
2. 1만원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4.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한 영업소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④ 가맹점이 그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3조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을 훼손하여 상품권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2. 상품권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4. 위조·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환전한도는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해야 한다.

**제11조(할인 판매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상품권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 실적이 우수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품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권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우대한 금액의 환수)** 군수는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③ 군수는 상품권을 개인 및 법인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이하 “환전”이라 한다) 업무를 금융기관(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할인 판매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출	128,000	40,000	40,000	40,000	40,000	288,00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세출	소요비용
계	128,000
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	60,000
판매대행사 수수료	15,000
상품권 및 봉투제작, 홍보비 등 비용	26,500
시스템구축	26,500

작 성 자 :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30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7. 7. 01. 시행)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에 노후소화기의 수거근거를 마련하여 폭발위험이 있는 노후소화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법령 근거없는 부담규정 등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 1) 과태료, 보고·검사 규정 삭제
- 2) 과태료 관련 별지서식 삭제

나. 장려금 지급대상 명확화(안 제11조)

다. 폐소화기 배출기준 신설(안 별표 5)

종별		규격	처리비
그 밖의 폐기물	폐소화기	3.4킬로그램 이상	4,000
		3.4킬로그램 미만	3,000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10. ~ 1. 3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별표6”을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전 제3항) 중 “따라”를 “따라 개인, 단체 등에”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활폐기물"이란 <u>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p> <p>2.~7. (생략)</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② (생략)</p> <p>③ <u>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별표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u>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u></p> <p>③ <u>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활폐기물"이란 「<u>폐기물관리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p> <p>2.~7. (현행과 같음)</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u>따라 개인, 단체 등에</u>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보고, 검사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명기한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또는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장비, 현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li> <li>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li> <li>3. 쓰레기 봉투 제작업자</li> <li>4. 쓰레기 봉투 판매자</li> <li>5. 청소대행업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등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p>	<p>&lt;삭 제&gt;</p>

**【별표 5】**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원/개당)

종 별	규 격	처 리 비
가전 제품류	냉장고 500리터 이상 3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	8,000 6,000 4,000
	텔레비전 107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상	5,000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컨 26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10,000 5,000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4,000
가구류	장농 90센티미터 이상 1쪽 90센티미터 이상 1/2쪽 90센티미터 미만 1쪽 90센티미터 이상 1/2쪽	15,000 8,000 10,000 5,000
	서랍장식장 1대당	5,000
	서랍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식탁 6인용 이상 6인용 이하	5,000 4,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응접테이블 1대당	4,000
	응접세트 긴의자 의자	5,000 2,000
	침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1인용 프레임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2인용 프레임	10,000 5,000 5,000 15,000 8,000 7,000
	전축케이스 1개당	3,000

종 별	규 격	처리비	
가구류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문갑	모든 규격	3,000
	쇼파	1인용 소형 4인용 대형 6인용 이상	5,000 7,000 10,000
	밥상	4인 이상 4인 미만	3,000 2,000
	싱크대	모든 규격	5,000
	책꽂이	모든 규격	3,000
	의자	모든 규격	3,000
	옷걸이(행커)	모든 규격	2,000
생활용품	캐비닛	모든 규격	4,000
	서류캐비닛	4단 이상 3단 이하	3,000 2,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그랜드	10,000 15,000
	쌀통	용량 80킬로그램 이상 용량 80킬로그램 미만	4,000 3,000
	벽시계	1미터 이상 1미터 미만	5,000 3,000
	인형류	5킬로그램 기준	2,000
	장난감류	5킬로그램 기준	2,000
	가방	1개당	2,000
	액자	1개당	4,000
	진열대	1개당	2,000

종 별	규 격	처리비	
그 밖의 폐기물	문짝	1쪽당	5,000
	수족관	100센티미터 이상	7,000
		100센티미터 미만	4,000
	거울	1개당	3,000
	자전거	유아용	4,000
		어른용	5,000
	운동기구	1미터 이상	5,000
		1미터 미만	3,000
	의료기기	1미터 이상	5,000
		1미터 미만	3,000
	유모차	모든 규격	4,000
	깨진 유리	10킬로그램 기준	2,000
	항아리	1개당	3,000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물탱크 포함한 변기통	모든 규격	5,000
	이동식 변기통	1개당	10,000
	찬장	1대당	3,000
	가스렌지 받침대	모든 규격	2,000
	고무통	1개당	5,000
	욕조	모든규격	3,000
	장관	3.3제곱미터당	3,000
	물탱크	킬로그램당 (1톤탱크: 26킬로그램)	280
	카펫	3.3제곱미터당	2,000
	이불	1개당	2,000
	목재	20킬로그램 기준	2,000
	플라스틱류	10킬로그램 기준	2,000
	재봉틀	1개당	5,000
	탁구대	1개당	5,000
	병풍	1개당	2,000
	간판	60×180센티미터 이상	7,000
60×180센티미터 미만		4,000	
입간판		3,000	
건설폐기물	톤당	28,000	
롤온박스	1대당	100,000	
<신 설>	폐소화기	3.4킬로그램 이상	4,000
		3.4킬로그램 미만	3,000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31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폐쇄로 수거물량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어 환경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조치요구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현실화율이 50퍼센트 정도로 낮아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 별표 6)

1) 수거식 화장실

가) 10리터기준 137원⇒189원 : 52원 인상, 인상률 37.9퍼센트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가)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16,070원⇒18,225원 : 2,155원 인상, 인상률 13.4퍼센트

나) 100리터마다 초과요금 1,161원⇒1,300원 : 139원 인상, 인상률 11.9퍼센트

나. 법령 근거 없이 가산금 징수규정 삭제(안 제24조제6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18.~2019. 1. 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u>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u>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름</p> <p>2.~3. (생략)</p> <p>②~⑤ (생략)</p> <p><u>⑥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된 분뇨 처리 수수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 금액에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추가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제28조(이의신청)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u>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u>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와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름</p> <p>2.~3.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 준용한다.</p>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0리터	<u>122원</u>	<u>174원</u>	15원	<u>137원</u>	<u>189원</u>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u>14,945원</u>	<u>17,100원</u>	1,125원	<u>16,070원</u>	<u>18,225원</u>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u>1,011원</u>	<u>1,150원</u>	150원	<u>1,161원</u>	<u>1,300원</u>

비고

1. “수집·운반” 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포함
2. “처리” 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말함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32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증대에 따른 약품비 등 운영비 증가로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원가산정 결과 현실화율이 28퍼센트로 낮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1) 킬로리터당 16,000원 ⇒ 18,000원
- 2) 2,000원 인상, 인상률 12.5퍼센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18.~2019. 1. 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가축분뇨 (원/킬로리터)	<u>16,000</u>	<u>18,000</u>	10,000	<u>6,000</u>	<u>8,000</u>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33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2013년 최초 위원회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 재기재사항인 용어 정비(안 제2조)
-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 다.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삭제(안 제5장)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 28.~2. 1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 제6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20조,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p> <p>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p> <p>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p> <p>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말한다.</p> <p>5.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7조·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단지등에 설치하는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6. “군민자전거”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p> <p>7.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p> <p>8.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1. “군민자전거”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p> <p>2.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u>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u>영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u></p> <p>②~④ (생략)</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군수는 <u>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군수는 <u>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u>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군수는 <u>법 제11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u></p> <p>&lt;삭 제&gt;</p> <p>② <u>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u></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u>제5장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u>  <u>제20조(설치)</u>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1조(삭제 2015.12.10.)</p> <p><u>제22조(기능)</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li> <li>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li> <li>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등의 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li> </ol> <p><u>제23조(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p>	<p>&lt;삭 제&gt;          &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li> <li>2.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li> <li>3. 도시계획·도로교통 또는 자전거이용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li> <li>4.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민간단체 대표</li> <li>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lt;삭제&gt;</p>
<p><u>제24조(위원의 임기)</u>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lt;삭제&gt;</p>
<p><u>제25조(위원장의 직무)</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lt;삭제&gt;</p>
<p><u>제26조(회의)</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제2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u></p> <p><u>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9-34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월별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거창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뜻을 밝혀 규정함(안 제2조)

- 1)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

나. 사업 대상자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1)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일 것
- 2) 매년 군수가 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 생산할 것
- 3)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다. 사업 대상자 신청과 심의를 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지역농협과 협약체결, 그 지역농협의 업무를 정함(안 제6조·제7조)

마.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이자등의 정산절차를 정함(안 제8조)

바. 사업의 재원을 정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50백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4.~11.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대상자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사업 대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일 것
  2. 매년 군수가 결정·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을 생산할 것
  3.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 ② 군수는 군의 주요 재배 농산물 중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업 대상자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해야 한다.

제8조(이자등의 정산절차) 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재원) 제8조에 따른 이자등의 재원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자금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사업”을 “사업,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서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 후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영농경력	집	휴대전화
				년		

### ○ 신청내역

농작물 재배 면적(제곱미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킬로그램/포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적용 희망량	
			수량(포대/40킬로그램)	희망금액(천원)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 년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전년도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2. 신용조사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해당 농가) 1부.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여) (인)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이자등 지급청구서

1. 사 업 명: 20 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2.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농협명: 0000농업협동조합 )

○ 주 소:

○ 대표자: (남/여)

3. 이자등 청구액: 금 원(W )

4. 이자등 청구 명세

(농가, 포대/40킬로그램, 원)

사 업 대상자	신청량 (계약량)	지 급 개월수	월 지급액	총 지급액	이 율	이 자 청구액	대행 수수료
					연 퍼센트		

5. 지급계좌번호: 농협 (통장사본 첨부)

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등을 정히 청구합니다.

- 붙임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개인별 내역(한글 서식) 1부.  
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월별 계산내역(엑셀 서식) 1부.

20 . . .

청구자 주 소:

성 명: 0000농업협동조합 (인)

거창군수 귀하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관련조문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군비	50	50	50	50	50	250
	소계	50	50	50	50	50	25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이자보전 : 50백만원

가. 평균 이자액 130,300원 × 383명 = 49,904,900원 산정,

나. 인당 평균 지원액 : 7,000천원(월 1,000천원)

다. 인당 평균 이자액(월 1백만원 지급시) : 130,300원

라. 이자개시 2019. 4. 20.~이자종료 2019. 11. 30.

### 2. 지원예상 농가수 : 383명

작성자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